

이 사 회 규 정

2015.11.02. 제정

2021.11.24. 개정

2023.03.27 개정

에스티팜주식회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따른다.

제 3 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3 조의 2 (대표이사 승계계획) 회사는 대표이사의 승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 받아야 하며, 승계계획 실행 시 이사회는 승계절차 이행을 감독한다. < 신설 2021.11.24 >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에 이사회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 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이사회 업무의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제 5 조 (의장)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당사의 정관이 정하는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이사회 의 3 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일시, 장소를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7 조 (의결방법)

- ① 이사는 각 1 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⑤ 이사회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

제 8 조 (결의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법상 규정된 다음 각 목에 관련된 사항

- 가. 주주총회의 소집(상법 제 362 조)
- 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과 공동대표의 결정(상법 제 389 조 제 1. 제 2 항, 제 393 조의 제 2 항)
- 다.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회사의 업무집행(상법 제 393 조 제 1 항)
- 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상법 제 393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 마.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 393 조의 2)
- 바. 이사의 자기거래(自己去來)의 승인(상법 제 397 조, 제 398 조)
- 사.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 416 조)
- 아.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승인(상법 제 447 조, 제 449 조의 2)
- 자.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 461 조 제 1 항)
- 차.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상법 제 469 조)
- 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상법 제 513 조 제 2 항, 제 516 조의 2 제 2 항)
- 타. 타 법인에 대한 중요한 출자 및 중요한 출자지분의 처분
- 파. 이사회 규정 개정 및 폐지
- 하.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상법 제 374 조)
- 거. 업무 운영에 있어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 너. 자본 감소(상법 제 438 조)
- 더.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 러. 자회사 또는 조합의 설립
- 머.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및 대표이사 또는 이사 3 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정관상 규정된 사항 가운데 위 제 1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에 관련된 사항

(1)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의 설립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사항

(4)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을 정하는 사항

3. 제 1 호 및 제 2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다음 각 목에 관련된 사항

가. 자본금의 100 분의 10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당해사업연도의 누계금액)에 관한 사항. 다만, 그 누계잔액이 자본금의 100 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 분의 5 이상(당해 사업연도 누계금액) 변동되는 사항

나. 자본금의 100 분의 10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당해사업연도 누계금액)에 대한 사항. 다만, 그 누계금액이 100 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 분의 5 이상 변동(당해사업연도 누계금액)을 초래하는 사항

다. 위 항목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 상관 없이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인하여 계열회사에 새로이 추가되거나 제외되게 되는 사항

라. 최대주주등(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및 주요주주를 상대방으로 하거나(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의 계산으로 거래하는 경우 포함. 이하 같음) 그 최대주주 등 및 주요주주를 위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가지급 및 대여,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담보제공, 금전채무의 지급보증, 출자, 유가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 부동산의 매수, 매도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마. 최대주주등(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영업상 거래를 위하여 거래조건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단, 동 거래조건이 최대주주 등 이외의 제 3 자와의 거래조건과 차이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임직원에 대한 1 억원 이상의 대여에 관한 사항

사.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사항

아. 이사회운영에 관한 사항

자. 대표이사 승계계획의 승인 <신설 2021.11.24>

4. 기타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② 각 호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결정과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③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1.24>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9 조 (의안설정) 이사회에 부의하는 안건선정은 담당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이사가 유고시에는 당해 부서의 장 혹은 지명된 자가 할 수 있다.

제 9 조의 2 (이사회 내 위원회) <개정 2023.03.27>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⑥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재결의 할 수 없다.

제 10 조 (이사 아닌 자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 상담역 또는 고문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1 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 및 정관에 의거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사가 이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는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 3 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사전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경우 이사회는 당해 이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의 직을 사임토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 ⑤ 이사는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회사의 비밀을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안 된다.
- ⑥ 이사는 업무와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간사)

- ① 이사회에 본 규정 제 4 조 3 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간사를 둔다. 단, 간사의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간사직무를 대행케 할 수 있다.
-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사무 전반을 정리한다.

제 13 조 (의사록) 의사록의 기록은 담당부서의 장 또는 지명된 자가 담당하며 의사록에는 출석이사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 14 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책임) <신설 2021.11.24>

- ① 이사회는 수립된 요구사항 및 기대사항과 관련된 감독 책임을 인지하고 수용한다. 단,

이사회는 외감법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 감사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 등의 감독 책임을 감사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감독 책임을 가진다.

제 15 조 (사외이사의 활동지원 등) <신설 2021.11.24>

- ①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23.03.27>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이 사 회 소 집 통 지 서

상법 제 390 조 및 당사 정관 제 43 조에 의거 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 장 소 :

3. 의 안 :

1) 제 1 호 의안

가. 소집일시 :

나. 소집장소 :

다. 주주총회 부의안건 :

제 1 호 의안 :

제 2 호 의안 :

※ 이사회 참석여부를 유선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별표 2 >

이사회 의사록

- ◇ 일 시 :
- ◇ 장 소 :
- ◇ 출석이사: 명 중 명
- ◇ 출석감사: 명 중 명

의장 대표이사 김경진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참석이사 확인 후 당사 정관 제 46 조에 의거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서 의장은 다음의 의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

1. 개최일시 :
2. 개최장소 :
3. 부의안건 : 제 1호 의안 :
제 2호 의안 :
제 3호 의안 :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다.

년 월 일
에스티팜주식회사

의장대표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감

사

(인)